

(별지3)

【유사사례】

- 질의자 : 강원도지사
- 회시근거 : 행정자치부 공기 13330-313('95.5.1)
- 질의요지 : 춘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“재산의 관리” 제 37조에 “대부”“사용허가”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맞도록 삭제 개정 또는 존치하여도 되는지 여부
- 회시내용 : '94년 개정시 업무의 능률화와 민원불편을 해소를 위해 관리가 삭제된 만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므로 동법조항과 부합되도록 삭제, 개정되어야 한다.